

#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0
----------	-----

제출년월일 2000. 3 .  
제출자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함.

## □ 주요골자

-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대상 확대(안 제2조)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감면에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고,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4조)
- 지정 문화재등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면제로 개정(안 제10조)
-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개정(안 제12조)
-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면제 규정을 삭제(현행 제15조, 제16조)
- 기타 조문별 자구의 수정

□ 개정조례안 : 별첨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복지법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 임대주택법 제2조, 제12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시세감면조례 개정 준칙 - 행정자치부 통보사항

\* 경기 세정 13400 - 35(2000. 1. 12)호 공문

#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취득하는”를 “감면신청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취득한”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중 “5세대”를 “2세대”로 하고, 동조단서중 “임대주택법”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한다.

제15조와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3 본문중 “취득하는”을 “보유하는”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lt;단서신설&gt;</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 -----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감면신청하는-----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정한다.</p>

## 신·구조문 대비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 4. (생 략) ② (생 략)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u>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u>등록을 한 자</u> ----- ----- ----- --  2. (현행과 같음) 3. ----- <u>등록을 한</u> ----- ----- --  <u>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 3. (생 략)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 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1 ~ 3. (현행과 같음) <u>&lt; 삭제&gt;</u>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관계법         령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과세기         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         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         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         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         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 로         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         세 및 사업소세(재산합)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내         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         (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         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         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합)를         추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주차 전용 토지에 대한 답변)주차장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 고 설치한 노의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 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 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 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다.</p> <p>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 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 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p> <p>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 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p> <p>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p> <p>3.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 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가액 을 시가표준액 또는 법입장부가액중 높은 가 액으로 한다.</p>	<p>&lt; 삭제 &gt;</p>

## 신·구조문 대비표